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주차 괜찮을까?
☞ **과태료 10만원 !**
- 장애인주차구역**앞**에 **잠깐** 주차하고 짐 좀 내려볼까?
☞ **과태료 50만원 !**
-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회수 됐지만 누가 알겠어?
☞ **과태료 200만원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주차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 ‘주차가능(본인용)’ 표지가 있고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 주차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 ‘주차가능(보호자용)’ 표지가 있고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주차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1초라도 가로막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시-장애인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위, “만차” 표식
- 이런 상황인 경우 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2018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Q & A

1.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안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임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6. 06. 08. 신설
2015. 07. 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입니다.
5.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단속 구역에 해당됩니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입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8. 문의 인천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 시설팀 032-560-4904,4317